

의안번호	2219152
의 퇴 인	백선희 의원
회 답 일	2026. 9. 18.
추계번호	26A280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재량규정
2	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 상세 사유

- 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을 포함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와 그 구성원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해당할 때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의 대상이 됨
-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의 범

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인 가구 수는 240.6만 가구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54.4%를 차지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수별 가구 수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수 추이

(단위: 만 가구, %)

	2021	2022	2023	2024	202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482.7	469.1	459.1	451.7	442.2
1자녀	197.5	198.9	198.7	199.4	201.6
2자녀	236.2	224.5	216.9	210.6	202.0
3자녀	44.8	41.7	39.8	38.1	35.3
4자녀	3.7	3.4	3.3	3.1	2.9
5자녀 이상	0.5	0.5	0.5	0.4	0.4
(2자녀 이상 비중)	(59.1)	(57.6)	(56.7)	(55.8)	(54.4)

자료: 국가데이터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